

시흥시 공유재산(산업시설용지) 매각 공고

경기도 시흥시 공유재산(산업시설용지)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,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에 매각 재산의 현황, 각종 공부와 도시계획 저촉 여부 및 행정상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10. 13.

시 흥 시 장

1 공급대상 토지

※ 매입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며, 본 공고문의 내용 중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① 입찰에 부치는 재산의 표시

구 분	위 치	면 적	지 목	용적률*	건폐율	예정 가격**	비 고
토지	매화동 845-1	8,099.3㎡	공장용지	300% 이하	70% 이하	19,103,432,700	최고가입찰, A4-1

* A4는 제조업용도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 A1의 용적률과 높이를 적용함

** 예정가격 : 2개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액 + 감정평가수수료

② 입주대상 업종

※ 앞부분의 숫자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임

입주가능업종	비 고
24. 1차금속제조업	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, 「악취방지법」, 「폐기물관리법」에 의거 특정수질유해물질,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는 제한될 수 있음
25. 금속가공제품제조업	
26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	
27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
28. 전기장비제조업	
29.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	
30.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	
33. 기타 제품 제조업	
61. 통신업	
62. 컴퓨터프로그래밍,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	
63. 정보서비스업	
70. 연구개발업	
72.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	
35114 태양력발전업	
68112 부동산임대업	
(관리가관이 지식산업센터 임대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)	61,62,63,70,72,35114,68112 업종코드는 지식산업센터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 허용됨

2 공급일정 및 장소

① 신청방법 : 전자입찰(우편접수 불가)

- 가. 본 입찰은 **일반경쟁입찰**이며,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(이하 “온비드”라 합니다, <http://www.onbid.co.kr>)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.
- 나.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,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한 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,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.
- 다.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. (단, 개별 신청자의 사정에 의한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)

② 공급일정 및 장소

구 분	일 정	장 소	비 고
매각 공고	10. 13.(화)	시흥시청 홈페이지* 및 온비드 *시정소식>시정정보>고시/공고	https://www.siheung.go.kr http://www.onbid.co.kr
입찰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	10. 13.(화) ~ 11. 2.(월) 10:00 ~ 17:00	온비드	http://www.onbid.co.kr
현장설명	-	-	별도 설명회 없음
개찰 및 낙찰자 결정	11. 3.(화) 10:00 이후	시흥시 투자유치담당관 입찰집행관 PC	
입주 자격 심사 서류 제출	11. 4.(수) ~ 11. 6.(금)	시흥시 기업지원과	☎ 031-310-6094
입주 심사	11. 9.(월) ~ 11. 13.(금)	시흥시 기업지원과	☎ 031-310-6094
입주대상자 확정 (입주자격 심사) 결과 게시	11. 16.(월) 10:00 이후	온비드	http://www.onbid.co.kr
매매계약 체결	11. 17.(화) ~ 11. 19.(목)	시흥시 투자유치담당관	☎ 031-310-2788

※ 입주계약 체결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(현재 3개월) 이내에 관리기관(시흥시 기업지원과)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.

※ 상기 일정은 입찰 신청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[신청 자격]

- ①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산업집적법”이라 한다)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매화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(시흥시 고시 제2024-368호)에 의거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

※ 입주기업체의 자격 (시흥시 고시 제2024-368호, 매화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)

가. 산업시설구역 - 제조시설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, 산업집적법)」 제2조 제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
- 「산업집적법」 제2조 제1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자
- 「산업집적법 시행령」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

마. 공통사항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축이 제한 되는 공장 중 시·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
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(이하, 산업입지법) 시행령」 제42조의3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(업무)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자
- 「산업집적법 시행령」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

- ② 입찰공고일 현재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) 및 제33조(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)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③ 「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」 제4조(입찰자 자격제한)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, “온비드”에 이용자(회원)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자로서 “온비드”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접수 마감 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

[신청 접수]

- ① 신청접수는 **온비드 접수로만 가능하며, 공고된 기간의 정해진 시간 내에** 구비서류 제출 및 입찰 보증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.

※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신청 마감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신청을 변경·취소·철회할 수 없습니다.

- ② 입찰서는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, 제출 시점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③ 개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만 본인 명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, 법인 신청자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, 2인 이상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④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이행에 연대책임이 있으며, 필지 분할은 불가합니다.

[대상자 결정]

- ① 본 입찰은 온비드 시스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일괄 개찰하며,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.
 - ② 개찰 결과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
 - ③ 관리기관(시흥시 기업지원과)의 입주자격 심사 결과 입주계약이 가능한 자를 입주대상자로 결정합니다.
 - ④ 최고금액 입찰자가 입주 자격 심사 결과 부적합할 경우 차순위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입주 자격 등을 심사 진행합니다.
 - ⑤ 입찰 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, 별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.
- ※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.

4 구비서류

※ 각종 공부는 **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분**에 한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 공동명의일 경우 전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, 신청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.

구 분	제출 서류		장 소
입주심사시	공통	· 입주신청서(양식1), 입주계약신청서(양식2), 사업계획서(양식3), 개인정보 동의서(양식4), 종람확인서(양식5) · 사업자등록증(사본) · 대리시 : 위임장(양식6), 대리인 신분증	시흥시 기업지원과
	법인	·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	
	개인	· 신분증, 인감증명서	

구 분	제출서류		장 소
매매계약 체결시	공통	·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 · 대리시(추가서류) : 위임장, 위임용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	시흥시 투자유치담당관
	법인	·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(사용인감계 제출)	
	개인	· 신분증, 인감도장	
입주계약 체결시	공통	· 매매계약서, 입주계약신청서, 사업계획서, 토지사용승낙서 · 대리시(추가서류) : 위임장, 위임용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	시흥시 기업지원과
	법인	·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	
	개인	· 신분증, 인감증명서	

[납부]

은행명	계좌번호	예금주
농협	301-0310-8820-91	시흥시청

- ①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 일시 전까지 ‘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’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,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공고된 공급일정 내에 상기 계좌로 신청인 본인명의로 입금(무통장, 인터넷뱅킹, 텔레뱅킹 가능)하여야 하며, 지정 계좌 외 타 계좌로 입금 또는 신청마감일시 이후에 입금한 경우에는 신청이 무효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③ 한번 제출된 신청서 및 입금된 입찰보증금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.
- ④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,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,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.
- ⑤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시흥시의 입금계좌로 이체되며, 유찰자(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)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,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.
- ⑥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며,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,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시흥시에 귀속되며,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[반환]

- ①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②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주대상자 확정일 익일부터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(은행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)에 입찰 신청시 기재한 환불계좌로 입금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.
- ③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여야 하며, 신청인이 기재한 입금 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 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시흥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④ 낙찰되지 않은 신청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 이후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일괄 반환합니다.(단,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공제함)
- ⑤ 입찰보증금을 과오 납부한 경우라도 즉시 반환되지 않으며, 입주대상자 선정 이후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입찰보증금은 반환 기간(선정일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5일) 내에 반환처리 됩니다.

[귀속]

- ①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매매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, 입찰보증금은 시흥시에 귀속됩니다.
- ② 신청자격 부적격자인 경우 및 허위 또는 부실한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, 계약체결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시흥시에 귀속됩니다.

6 대금납부조건 및 지연손해금

지연손해금율에 대한 이자율은 향후 금리변동,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, 변경시 각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.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

[대금납부조건]

구 분	계약금	잔 금
납부 시기	매매계약 체결 시	매매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
납부 비율	입찰한 금액의 10%	입찰한 금액의 90%

※ 약정대금 납부는 별도의 고지를 생략하오니 매매계약서상의 납기일에 맞추어 은행 계좌로 입금 (계약자 명의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지연손해금] : 분할납부 약정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미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과합니다.

연체기간별	1개월 이내	1개월 이상 ~3개월 미만	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6개월 이상
지연손해금 이율	연 7%	연 8%	연 9%	연 10%

※ 상기 지연손해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80조(연체료의 징수)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의해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이율로 따릅니다.

7

처분제한 및 준수사항

- ① 「산업집적법」 제39조에 의거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(사업개시 신고) 전 또는 신고 후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(현재 5년) 내 임의처분이 제한되며,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이전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 불가합니다.
- ② 「산업집적법」 제41조에 의거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③ 「산업집적법」 제42조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(현재 3년) 이내에 공장 건설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- ④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환수되거나 입주계약·분양계약시에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제·해지되는 경우(입주계약 미체결로 인한 해제·해지의 경우 포함)에는 분양 대금의 10%를 위약금으로 우리시에 귀속시킵니다. 이 경우 용지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⑤ 매매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제세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며, 반환할 매매대금 중에서 공제합니다.

8

유의사항

[신청 및 계약 관련 사항]

- 공급신청 전에 공급공고문, 관리기본계획 승인내용(지구단위계획, 환경·교통·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, 에너지사용계획 등) 및 인허가 조건 사항,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,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·확인하시고 매입 신청하시기 바라며,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.
- 건축 시 관리기본계획(지구단위계획 등)(변경) 승인 내용·인허가 조건 사항·관리기본계획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, 지구단위계획 등의 일부 규제 내용이 기존의 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라야 하며, 공고일 이후(공급신청일 이후)에 산업단지계획 및 관련 법령 등의 제·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도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하며, 이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본 매각재산에 대하여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현장 및 각종 법령상의 제한사항을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, 확인 소홀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매수인은 매입 토지를 지정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, 「산업집적법」 제41조에 의거 지정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-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매매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
- 토지 사용가능 시기는 매매대금 전액을 납부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,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공사 및 건축 관련]

-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, 형상, 경사도, 고저, 법면상태, 암반, 석축, 연약지반, 암성토지반 및 옹벽 발생여부,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, 공사계획평면도, 특수구조물 현황 등 토지이용 장애사항, 기반시설(오폐수처리장, 폐기물처리장, 배수지, 변전소 등) 및 혐오시설 입지 등 사업지구 내외 입지 여건을 반드시 현지답사 및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,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. 또한 계약체결 후 부지의 연약 지반처리, 경사정도, 암반제거, 법면제거 등 부지개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매수인 부담으로, 우리 시에 청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. (단, 암반분포 현황 등은 사업지구 내 대표지점에 대한 토질시험 결과에 의한 추정치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)
- 해당부지 안전·환경관리를 위해 웬스가 설치되어 있으며, 이는 건축공사 착공 시 매수인이 처리하여야 합니다.
- 건축공사 시에는 가설건축물 설치 및 자재 적치 등으로 타 기업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이로 인한 손실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건축공사 착공 시 부지경계는 매수인이 지적 공사에 확인 후 착공하여야 합니다.
- 건축공사로 인해 기반시설 파손 시, 즉시 매수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. 단, 건축공사와 관련없이 파손된 경우 증빙서류(파손행위 사진 등)를 즉시 우리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, 미 통보 또는 증빙서류 미비 시 매수인의 책임하에 복구해야 합니다.
- 계약부지 이외의 부지 및 공공시설(보도, 차도, 녹지 등)에는 공사용 자재 적치 및 장비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, 미준수 시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.
- 건축공사 지하 터파기 시, 흙막이 공법은 인접 부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, 인접 부지 또는 공공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공법(예, 어스앵커 등)은 금지합니다.
- 공급부지 공사 중 발생한 터파기 토사는 지구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, 주변 토지 및 공공용지에 적치할 수 없습니다. 상기 사항 미준수로 인한 토사유실 등 환경 관리는 매수인이 실시하여야 합니다.
- 건축공사 착공 전 공사계획평면도 등 최종 승인 내용(승인도서 등) 및 가로시설물(가로수, 가로등, 신호등 등) 및 지하 매설물(상수, 하수, 우수, 가스, 통신, 난방 등) 간섭 사항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.
- 통신, 전력, 용수, 도시가스 등은 산업단지 내로 공급될 예정이나, 각 기반시설 간 선망에서 개별 필지로 인입은 매수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.
- 우수, 오수, 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 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, 연결하여야 하고, 단지 조성 시 우수처리 및 계획과 확보를 위한 일부 분양용지의 경우 분양면적 내에 법면 (배할선)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, 토지사용 중 도로, 상하수도 경계석, 가로수 등의 공공 시설물을 파손·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.

- 각종 우수, 오폐수, 상수 등 분기관 시공 전, 부지 조성공사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, 시공 시에는 우리 시 현장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, 추가 분기 시에는 시흥시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. 또한, 건축공사로 인해 기 설치된 관로 내 토사퇴적 등의 사항이 발생 시에는 매수인 부담으로 조치해야 합니다.
- 전기, 통신, 난방, 가스, 상·하수도 등 기반시설물 사용 또는 공급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공급기관(한전, KT, 도시가스공급사, 시흥시 맑은물사업소, 통신회사 등)별로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.
- 건축공사 시 자체적인 환경대책(세륜세차, 비산먼지 발생 방지, 폐기물처리 등)을 수립하여 착공 전 관련인허가 절차 시행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-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(미포장)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시와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사용종료 시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.
- 건축공사 시 발생한 토석, 쓰레기 및 부산물은 완전 수거 처리하고, 폐건축자재 등 건설폐기물의 방치 및 불법투기를 방지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모든 사항을 관련법에 의거 책임처리하여야 합니다.
- 임시기반시설(진입도로, 상·하수도, 전기·통신 등) 해당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가설 등 임시사용하여야 하며, 임시기반시설의 조성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토지 사용시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·재해·교통 등 각종영향평가, 에너지 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인 비용 부담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, 시흥시에서 제공한 시공 측량에 따른 부지경계는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설계 및 시공 오류로 인한 인접부지 침범 시 매수인의 책임하에 원상복구토록 합니다. 아울러, 전력, 통신, 가스, 상·하수도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. 또한, 건축공사로 발생한 사토, 건축폐기물은 입주자(매수인)가 처리하여야 합니다.
-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, 대기오염, 소음·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합니다.
- 신청인은 토지의 조성 상태, 현황(형상, 고저, 암반, 법면상태, 식재,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) 및 사업지구 내·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반드시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,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.
- 매수인은 건축물의 건축 시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등에 대해 직접 받아야 하고,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허 등은 매수인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, 인허가 불허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제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.
- 잔금 납부 또는 토지사용승낙 후부터는 각 토지의 관리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.
- 건축계획 수립 시 매화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포함)과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(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포함)에 의합니다.

[문의처]

문 의 처			
공급신청 · 대금납부 등 매각 관련	시흥시 투자유치담당관	☎ 031-310-2788	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
입주심사 및 입주계약	시흥시 기업지원과	☎ 031-310-6094	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

2026. 10. 13.

